

# 2023년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경위

- 동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2022. 11. 1. 서울특별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. 11. 3.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제1항 제5호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,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2조(기금의 설치)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·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기금운용계획(안) 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2022년도말 조성액(A)	2023년도 조성계획			2023년도말 조성액 (E=D+A)
	수입(B)	지출(C)	증감(D=B-C)	
6,699	18,550	18,007	543	7,242

## 4. 검토 의견

### 가. 기금 조성 개요

-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및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.

#### 기금개요

- 기금명 :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」
- 기금분류 : 융자성(목적상), 공무원복지(성질상), 직접관리(관리방식)
- 기금용도 :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및 기타 주거안정 사업
- 조성재원 : 융자금 미회수 채권, 일반회계 전입금, 융자금 이자수입 등
- 설치년도 : 2021년

#### 운용계획

재원구성	수입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융자금 회수금</li> <li>▶ 일반회계 전입금</li> <li>▶ 융자금 이자수입, 기타 이자수입 등</li> </ul>
	지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융자</li> <li>▶ 기타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li> <li>▶ 기타 운용 경비</li> </ul>
운용규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사업비 기준 <b>연간 약 180억원*(±α)</b> 규모 운용</li> <li>- 사업비 규모는 최근 2년간('18~'19) 전세자금 지원금 신청수요(평균 194억), 전세가 상향 추세, 1인당 개인한도 현실화(증액)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80억원으로 하되,</li> <li>- 일반회계 <b>재원부담 최소화</b>를 위해 <b>연차별로 확대</b>('21년 130억, '22년 155억, '23년 이후 180억)</li> <li>※ 연간 운용규모는 신청수요, 당해연도 상환금 수입규모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년 탄력적으로 조정(±α)</li> </ul>
조성목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750억원 ('21년~'26년)</b></li> <li>※ 기융자 회수금 266억, 일반회계 전입금 461억, 이자수입 23억</li> </ul>
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시 재정예의 영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기존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업비를 기금으로 편성(전출), 융자성 사업으로 재원이 소멸되지 않음 → <b>재원변경만 있을 뿐 시 재정규모 변동은 없음</b></li> <li>▶ 상환되는 융자금을 당해연도에 즉시 사용 가능 → <b>재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</b></li> </ul>

※ 행정국은 일반회계로 사업추진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, 주거안정 사업의 규모 확대 및 기금설치에 대한 직원들의 개선요청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0년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에 조례(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」)를 제출하였고, 의회 의결(‘20.9.3)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.

[예산(일반회계)와 기금의 비교]

구분	일반회계	기금
설치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 필요시</li> </ul>
예산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부서 예산요구 →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→ 지방의회 심의·의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→ 예산부서 협의·조정 → 지방의회 심의·의결</li> </ul>
집행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합법성에 입각한 통제 -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합목적성 차원의 자율성·탄력성 보장</li> </ul>
계획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추경예산 편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요항목(정책사업) 지출액의 20%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</li> </ul>

○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, 융자상환금, 기금운용수익(이자수입) 등을 통해 조성되며, 전세자금(융자금액 최대 1억원)을 신청한 서울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.

○ 올해 10월말을 기준으로 54억 2천 2백만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음.

### 〈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성현황〉

(단위 : 백만원)

‘21연도말 조성액(A)	‘22년도 증감액			‘22년도 10월말 조성액 및 관리현황		
	계(B)	수입액 (C)	지출액 (D)	A + B		
5,224	5,422	19,188	13,766	계	재투기금	시금고
				5,422	예탁	예치
				-		5,422

- 동 기금의 설치 목적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, 이러한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.

## 나. 기금 수입계획

- 2023년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96억원, 융자금 회수 88억 9천 9백만원, 예치금 회수 66억 9천 9백만원,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 1백만원으로 총 252억 4천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동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1)에 따른 기금 조성재원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〈수입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2	2023	증감
계	22,206	25,249	3,043
전 입 금 ( 일반 회 계 전 입 금 )	9,200	9,600	400
융 자 금 회 수 ( 이 자 포 함 )	7,740	8,899	1,150
이 자 수 입 ( 공 공 예 금 이 자 )	41	51	10
예 치 금 회 수	5,225	6,699	1,474

- 1)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조성)  
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  2.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
  3. 융자상환금, 차입금, 예수금 등
  4. 그 밖의 수입금

- 다만, 이자수입의 경우, 지출시기 및 예치기간을 고려하여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가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 다. 기금 지출계획

- 지출계획의 경우, 융자성사업비 180억원, 재무활동(예치금) 72억 4천 2백만원을 포함한 총 252억 4천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, 융자성사업비는 무주택 공무원 주택전세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 이는 동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제5조 각호의 기금 사용 용도에<sup>2)</sup>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2	2023	증감
계	22,206	25,249	3,043
융 사 자 성 사 업 비	15,500	18,000	2,500
기 본 경 비	7	7	-
예 치 금 (공공예금예치)	6,699	7,242	543

- 2)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1.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융자
  2.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
  3.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라. 기금 검토

- 서울시는 무주택공무원을 대상으로 상·하반기 2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, 최고 1억원(이자 연 1.0%)을 2년 기간으로 지원하고 있음.
- 융자금 집행내역을 보면, 2021년(175명 지원) 대비 2022년에는 12.0% 감소한 154명을 지원하고 있는 바,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(2021년 130억원 → 2022년 155억원) 지원이 줄어든 것은 사업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[연도별 전세자금 예산, 신청 및 지원현황]

(2022.10월 기준, 단위 : 명, 백만원)

연도	예산	집행률	신청현황		선정인원	지원현황		경쟁률 (신청인원/ 선정인원)
			신청인원	신청금액		지원인원	지원금액	
2016년	3,800	100%	129	7,474	70	68	3,800	1.8:1
2017년	3,800	100%	85	5,048	69	69	3,800	1.2:1
2018년	5,800	86.7%	226	8,152	82	73	5,032	2.8:1
2019년	6,800	100%	261	20,196	86	87	6,800	3.0:1
2020년	13,000	91.7%	305	23,086	179	172	11,919	1.7:1
2021년	13,000	89.1%	255	17,782	200	175	11,584	1.3:1
2022년	15,500	84.0%	320	27,030	183	154	13,020	1.7:1

- 아울러, 행정국은 서울시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이 시민들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전문위원	김정덕	입법조사관	이태기
------	-----	-------	-----





